기 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⑫ - 이항복 선생 묘(李恒福 先生 墓)**

임진왜란 후 병조판서로 병권잡고 크게 활약

최 종 규
포천명유회 회장

가산면 금현리 산 4-2에 위치한 경기도 기념물 제24호 이항복 선생 묘.

-지정번호: 경기도 기념물 제24호
-지정년월일: 1975.9.5
-시대: 1618년(광해군 10)
-소재지: 가산면 금현리 산 4-2
-재료: 토분 및 석물

화산들 옆 작은 구릉 위에 부인 안동권씨 묘와 더불어 쌍분을 이루고 있다. 봉분 앞에 묘비·상석·혼유석·망주석과 문인석 각 한 쌍이 갖추어져 있다. 선생은 1556년(명종 11)~1618년(광해군10년). 어렸을때부터 총명하고 재질이 우수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며, 조선시대의 문신으로서 가산면 금현리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호는 백사·필운·동강·청화진인·소운이고 본관은 경주이며 고려의 문하시중 이제현의 후손이고 성무의 증손, 예신의 손, 참찬 몽량의 자이다. 최륜의 외손이며 권율의 사위이다.

8세에 이미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났다. 아버지 몽량이 칼과 거문고를 주고 글을 지으라 하니 "칼은 장부의 기상이요 거문고는 천고의 소리를 간직했노라"하니 듣는 사람 모두가 큰 그릇이 될 줄 알았다. 또 성격이 활달해서 놀기를 좋아했고 장난이 심했는데 9세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커가면서 기골이 장대하여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1580년(선조13)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권지부정자를 거쳐 검열이 되었다. 당시 이이의 추전으로 이덕형과 함께 선조의 신임이 매우 두터웠다. 그리하여 1587년(선조20) 사가독서를 차지하는 영예를 누렸으며, 저작·박사·전적·정언·수찬을 역임하고 1589년(선조22) 이조좌랑에 올랐다. 그해에 예조좌랑으로서 정여립의 모반사건이 발생하자 왕명을 받들고 문사랑으로 입시하여 매우 복잡한 사건을 명쾌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다.

1590년(선조23) 직제학을 거쳐 동부승지로 승진되었으며 정여립 사건을 다스린 공으로 평난공신 3등으로 책봉되었다. 이듬해 좌승지가 되었는데 재상인 정철을 위로한 게 화근이 되어 파직당하였다. 곧 복직되었으나 다시 비난이 심해 신분이 위태롭게 되었는데, 대사헌 이원익의 도움으로 무사하게 되었으며 도승지로 승진하게 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발발하자 손수 촛불을 들고 앞장서서 피난길을 재촉하였다. 선조가 개성에 이르러 이조참의로 임명하였고 다시 왕명을 받들고 신성군, 정원군 두 왕자를 호위하여 평양으로 갔다. 선조는 다시 형조판서로 임명하였다가 대사헌으로 영전시켰으며 얼마 후에는 병조판서와 홍문관 직제학을 겸하게 하였다. 왜적의 기세가 꺾여지지 않고 계속 진공하여 대동강을 압박하게 되자 다시 선조를 모시고 의주로 옮겼다. 여기서 민심을 수습하고 또 대신을 명나라에 파견하여 호남지방에서 군사를 모집하게 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지경연춘추관사, 동지성균관사, 좌빈객 등을 겸직하였으며, 명나라 지원군을 맞아 들였다. 1594년(선조 27) 병조판서와 주사대장을 겸직하였고 다음해 이조판서, 홍문관대제학, 예문관대제학, 지의금부사, 우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1597년(선조30)신병으로 인하여 잠시 직책에서 물러났다가 후에 다시 병조판서로 복직되었는데, 임진왜란 이래 5번이나 병조판서로 병권을 잡고 크게 활약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7년의 국난을 당하는 동안 동분서주하면서 전쟁국면을 타개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1598년(선조31)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춘추관사 오성부원군으로 임명되어 보국안민의 중추적 역할을 맡았으며 진주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1599년(선조32) 좌의 다음해에 우의정에 전임되었고, 도원수로 도체찰사를 겸직하여 영남과 호남지방을 비롯한 여러지역을 순회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구휼에 힘썼다.

1600년(선조33) 영의정에 올랐으나 1602년(선조 35) 다시 재연된 붕당 싸움으로 인하여 자진해서 벼슬을 버리고 은둔하여 학문에 정진하였다. 이는 붕당 싸움에서 학식이 높은 성혼 같은 인물이 비난당하자 이를 변호하다가 규탄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1604년(선조 37) 다시 영의정에 복직되었으나 사직하여 시기와 중상의 대상에서 모면할 수가 있었다. 선조가 승하한 이후에 새로 임명된 영의정 이원익을 도와 이덕형과 함께 좌·우의정을 담당하였다. 특히 이덕형과의 관계가 밀접하여 관직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국사를 처리했다. 그리하여 이항복은 오성으로 이덕형은 한음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데, 두 사람 사리에는 수많은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1611년(광해군 3) 우의정이 되었으나 1613년(광해군 5) 역적의 괴수를 천거했다는 대간의 탄핵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올리고 은거하였다. 1617년(광해군 9) 인목대비의 폐모론이 대두하자 이를 극력 반대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이에 관직을 삭탈당하고 1618년(광해군 10) 함경도 북청으로 귀향갔다. 1618년(광해군 10) 사망하고 그해에 바로 복관되고 청백리에 선출되었다.

포천의 화산서원, 북청의 노덕서원에 제향되었다. 시호는 문충이며 신도비문은 이정구가 지었고 김집이 썼다. 유고집으로 『백사집(白沙集)』, 『북청일기(北淸日記)』가 전해온다.

특별기획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⑮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은 세계적 추세

노 영 민
포천경찰서

일본의 검찰청에는 최고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구검찰청이 있으며, 검사총장은 최고검찰청의 장이며, 검사장은 고등검찰청의 장이고, 검사정은 지방검찰청의 장이다. 구검찰청에는 상석검찰관이 구검찰청의 장으로서 청무를 관장한다.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지부에는 지부장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2차대전후 맥아더 사령부의 주도 하에 민주화시책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찰에 독자수사권을 부여하였다. 당시 일본 검찰도 경찰의 자질 및 인권침해·공소와 수사의 불가분성 등을 이유로 경찰에 대한 독자수사권 부여를 반대했으나 점령군 사령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일본경찰은 수사의 주재자가 되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 법관에 대한 체포장·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권등 강제처분권을 폭넓게 행사하게 되었다. 사법순사(순경)이상 경찰관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어 있고, 경부(경감)이상의 경찰관은 체포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검사는 소추기관이나 경찰수사를 보충하는 2차적·보정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지위도 인정받고 있다.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일반적 지시권으로서 이는 수사서류 양식 등에 관하여 일반적 준칙형식으로 지시하는 권한을 말한다. 둘째로 일반적 지휘권으로서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에 대한 수사방침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셋째로 구체적 지휘권으로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사건에 한하여 경찰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피의자신문·강제처분의 집행등에 사법경찰직원으로 하여금 보조케 하는 권한을 말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는 상호 대등·협력관계이며, 검사에게는 공소수행을 위해 극히 제한된 지휘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은 상호별개의 수사기관이며, 양자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이다. 그러나 구수사구조에 대한 고수와 공소와 수사간의 밀접성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일응 지휘복종관계로 유지되고 있다. 특히 사법경찰에게는 구속수사권과 증인신문청구권이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필연적으로 검사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 없다.

검사는 스스로 수사할 수 있음과 동시에 경찰을 지시·지휘하여 수사를 적정한 방향으로 이끌고 불충분한 점을 보완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다. 다만 지시·지휘라 하더라도 사법경찰이 독립된 수사기관이라고 하는 기본적 구조를 무너뜨리는 간섭은 아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고도의 법률지식을 요하거나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 등 검찰관 스스로가 1차적 수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찰관이 처리하는 전 형사사건의 90%이상을 경찰이 송치하기 때문에 범죄수사는 경찰에 위임하고, 공소관으로서의 임무만 충실히 하고 있다.

이상으로 현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있는 국가들을 세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위에서 본 것처럼 영미법계 국가인 영국과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발전하여 왔으며, 경찰은 원칙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감독 아래에 두고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선으로 선출된다. 따라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잘 보장될 수 있었고, 특히 영국의 경우는 경찰관리위원회를 별도로 선출하여 이를 관장케 함으로써 경찰의 중립성을 더욱 잘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임의수사원칙을 엄격히 시행·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영장의 발부에는 엄격한 사법적 규제가 행해져 왔다. 그 결과 피의자의 구속은 수사의 종결을 의미한다고 할 정도로 엄격히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영국과 미국에서는 변호사제도가 잘 확립되어 있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변호권이 잘 보장되어 있다. 피의자는 묵비권의 사전고지를 받고 변호인선임권도 사전고지되며, 변호인선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그 접촉기회가 극히 자유로이 보장되어 있어 수사의 초기단계부터 양당사자는 거의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를 전개하여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적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러므로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부여해도 인권침해의 우려가 적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도 경찰에 독립적 수사권을 이전하기에 앞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임의수사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고, 아울러 변호인의 수를 대폭 늘려 언제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여 인권침해의 우려를 방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독일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상명하복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는 수사에 있어서 인권옹호라는 측면과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가하기 위한 법정책적 동기의 측면이 강조된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인적·장비적 구조상 거의 모든 수사를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며, 그 조서에도 검찰조서와 동일한 증거능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는 명문의 규정만큼 실시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수사의 현실과 신속성확보를 위해 경찰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독립시키자는 주장도 있었다.

프랑스에서도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검찰과 사법경찰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로 규정되어 있다. 검사는 사법경찰에 대하여 수사지휘권 및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수사의 일부인 중대한 범죄만 개입함으로써 실질상의 수사주도권은 경찰에게 있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 수사권의 행사도 직접 명령하지 않고 조언·지시·지침 등을 통하여 지휘함이 통례이고,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만을 검사가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대륙법계인 독일과 프랑스의 수사체제도 형식적으로는 검사 위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찰의 주재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의 혼합형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 우리와 같은 형태인 검사주재 수사권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대전후 영미법체제의 강력한 영향을 받아 새로운 민주헌법을 제정하고 형사소송법을 대폭 개정하였으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치로 공안위원회제도를 설치하면서 경찰주재의 수사권체제로 전환하였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92조에 '검사·사법경찰직원 및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수사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찰과 경찰의 일반적 관계는 상명하복 또는 지배복종의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에 선다. 따라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해서 수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시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개별적 지휘는 스스로 수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이처럼 독자적인 범죄수사권이 부여된 일본경찰은 소신껏 범죄수사와 그 밖의 경찰행정을 추진할 수 있어 사기가 크게 향상되어 경찰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찰에 독립적인 수사권을 인정하거나 실제 운영면에서 대부분의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처리하고 있다. 입법론으로서도 일본과 같이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하여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형사소송법은 아직도 대륙법계통인 제2차대전후의 일본법을 답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는 세계추세에 대한 외면과 법률의 후진성을 면치 못한 것으로서 앞으로 전개될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더불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다음호에 계속〉

자유기고

공사장 주변 피해 사전 예방

안 정 희
주부명예기자·포천시선단동

우리고장에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분양 중에 있고 현재 건설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 분양된 T아파트 옆에 현재 D아파트가 신축되고 있는데 막바지 작업을 위해 휴일 없이 연일 바쁘게 돌아간다.

그런데 건설현장이 울타리 하나 사이로 T아파트와 경계를 이루고 있어 소음과 먼지 등 갖가지 공해로 공사현장과 인접한 동의 T 아파트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일요일에 일어난 일이다. 오전중에 공사현장에서 D아파트 고층 벽의 도장공사를 하고 있었다. 바로 옆의 T 아파트 주차장에는 30여대의 차량들이 아무런 방비 없이 주차되어 있었고 공중에서 날리는 미세한 페인트분을 뒤집어쓰고 있었다.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 스스로 화장을 한 셈이다. 그 많은 차량들이 페인트분에 하얀색의 미세한 점박이 차량으로 변해 있었다. 흰색, 은색 등의 차량은 그래도 표시가 덜 했으나 검정과 원색의 차량은 금방 표시가 났다.

그것을 본 차량주인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묻은 페인트는 수성이라 세차하면 없어지겠지만 그분들의 상한 마음은 어찌하랴.

일전에 도색 할 때처럼 차량을 비닐로 씌워놓고 했더라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날은 더군다나 일요일이라 평소보다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더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었다.

공사현장에 항의를 하여 앞으로 이런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했고 현장책임자는 피해차량에 세차를 해주기로 했다고 한다. 공사를 하기 전에 주변과 내 이웃을 한번 생각해보고 했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에게 큰 피해를 준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일을 거울삼아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고 주위에 더 큰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고객안전 · 고객만족 · 고객사랑을 지향하는 '금마 고속 관광'

고객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로 성장해온 '금마고속관광'은 언제나 친절과 안전운행을 약속합니다.

◇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

25인승, 35인승, 45인승

-효도관광 -신혼여행
-수학여행 -문화재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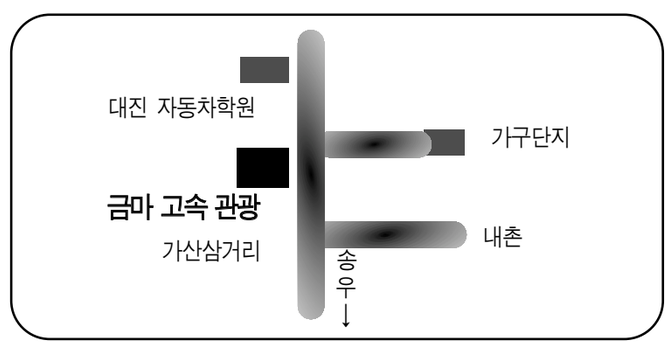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 1043-1 예약문의 : 031) 544-8888 대표이사 : 이 복 용